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2019. 12

# CISO





## CONTENTS

<b>I</b>	<b>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b> .....	<b>5</b>
<b>II</b>	<b>정보보호 최고책임자</b> .....	<b>11</b>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무.....	12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	16
<b>III</b>	<b>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b> .....	<b>19</b>
	1. 지정·신고 의무대상자.....	20
	2. 지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25
<b>IV</b>	<b>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b> .....	<b>27</b>
	1. 겸직 제한 대상.....	28
	2. 겸직 제한 업무의 범위.....	29
<b>V</b>	<b>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b> .....	<b>33</b>
	1. 일반 자격요건.....	34
	2. 특별 자격요건.....	35
<b>VI</b>	<b>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요령</b> .....	<b>39</b>
	〈기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관련 기타 질의·답변.....	4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

CISO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I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주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함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 따라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두 번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요건인 ① 영리목적 ②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③ 정보의 제공 또는 매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해석기준을 따라 판단
  - 영리목적의 경우 구체적인 영리행위 여부, 법인의 성격(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영리목적 유무는 법인의 특성,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 및 제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사례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구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li> <li>• 따라서, 회사 등은 구체적 영리행위가 없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본적으로 <b>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b></li> </ul>
비영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음</li> <li>- 다만, <b>비영리법인</b>이라 하더라도 <b>수익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li> </ul> </li> </ul>
특수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한국마사회 등 특수법인이 법률상 목적 중 비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li> <li>- 다만, <b>특수법인</b>이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b>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이 유통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li> </ul> </li> </ul>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기업</b>은 기본적으로 <b>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b>하므로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b>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b></li> <li>- <b>준정부기관</b>은 정부 업무의 수탁 수행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li> <li>- <b>기타 공공기관</b>은 개별적으로 “<b>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b>”를 판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여부를 판단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홍쇼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기타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이 준용됨</li> </ul> </li> <li>▶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기타 공공기관)</li> </ul> </li> </ul> </li> </ul> </li> </ul>
병원 등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업의 경우 실비보전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b></li> </ul> </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는 교육 실시기관으로 교육은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li> <li>- 다만, <b>사립학교가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b></li> </ul>
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는 영리목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기본적으로 <b>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b></li> <li>- 다만, <b>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관한 규정</b>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은 일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b>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금융회사</b>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li> </ul>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질의·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경우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실제 영리 행위는 없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방법은 구체적 영리행위 존재유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영리 목적의 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자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기업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방법은 인적으로 내국인·내국법인 등에 적용되고,</li> <li>- 장소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법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부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여부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 여부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인 또는 회사가 블로그, SNS, 오픈마켓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않은 국외 사업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적인 정보 제공·매개 형태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정보통신방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정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통신 이용 형태 상 국내에 소재한 자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 등을 경유하게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 모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

CISO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II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말함

###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무(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정보보호 업무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법 제47조제1항)의 수립 및 관리·운영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개선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대응체계(보고 및 조치 체계), 대응방법 및 절차, 복구방법 및 절차, 증거자료 수집 및 보관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계획 마련·시행 등
  -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 선정, 우선순위 결정, 이행계획에 대한 구현 등
  -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새로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법 제45조의2) 등
  -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보안서버의 기능·관리·운영 등의 적합성 검토 등
  -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
- \* 다음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등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복구하는 것
-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무 관련 질의·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운영·관리업무가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안의 차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서버·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개발업무가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보안 프로그램 개발 업무 등은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되나, 일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정보보호 업무에 미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서비스 사업이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 서비스는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되나, 다른 기업에 대한 보안서비스 사업은 정보보호 업무에 미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사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업무가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판매 등 사업성이 없고,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업무는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정보의 암호화, 보안서버 운영·관리 등은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되나, 개인정보 관리, 유출 등에 대한 대응·조치,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고충 처리 업무는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표시해야 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li> </ul>

### 참고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무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참고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직책 비교

직책	근거	대상	역할	직위	비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임원급	신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고충 처리	임원,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고충처리 부서의 장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	고위공무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	공개
정보보호 책임자 (CISO)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관리기관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4·5급 공무원, 영관급 장교, 임원급 관리·운영자	통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전자금융 거래법 제21조의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기술부문 보안 총괄	임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자 포함)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임원	공시
고객정보 관리인	금융지주 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등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	임원	-
정보화 책임관(CIO)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	-	통보

##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상 임원급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정보통신망법에 임원급을 정의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임원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따라서, 상법상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급에 해당

- 임원급은 통상적 명칭과 관계없이 다른 임원과 직무상 독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 참석 여부, 회사 대표에 대한 직보 여부,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 및 책임, 정보보호 업무 관련 예산·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 등으로 판단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는 형식적인 직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 각 호의 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를 의미

- (사례) CFO가 하위 직위로 형식상 CISO의 직위를 두고 CFO가 해당 회사의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직위 상의 CISO가 아닌 CFO를 의미함
- ※ 다만, CISO가 CFO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임원급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경우, CISO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볼 수 있음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 관련 질의·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SI업체 또는 보안업체가 기업집단의 개별 회사에 대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SI업체 또는 보안업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개별 회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관계를 규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개별 법인별로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어야 함</li> <li>- 다만, SI업체 또는 보안업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소속회사에 임원급으로 소속되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 대표 등의 이유로 법인이 여러 개의 독립된 부문으로 분리되어 있어 법인 전체를 총괄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내 1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경우,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li> <li>공동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급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법 상 이사·감사 등 등기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소명 가능</li> <li>비등기 임원의 경우, 직무·직위기술서, 조직도, 위임·전결규정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를 통해 소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장 직급자로 지정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볼 수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임원과의 대등성, 지휘 관계, 직급 체계,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장→부장→상무→전무→부사장→사장” 등의 진급체계 내의 직위인 경우, 부장은 임원급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사장·전무이사 등 임원 하위에 임원의 지위를 가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가능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사장·전무이사 등 임원 하위에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임원의 지위를 가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급이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장·실장·처장 등이 임원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 III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전문성을 갖춘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선임하여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신고제 운영

### 1. 지정·신고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 원칙적으로 아래의 지정·신고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제외대상(영 제36조의6제1항)

- (자본금 1억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 (소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으로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미만인 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 관련 질의·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가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법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의 회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 의무가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의 회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법인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한 경우, 같은 학교법인 소속 병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가 필요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내 1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경우,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이고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하 생략)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2. 지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위반횟수별로 1회 위반 1천만원, 2회 위반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 3천만원으로 규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1항, 제3항)
-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저.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6호의2	1,000	2,000	3,000
두.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22호	300	600	1,000
그.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12호			
4) 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 IV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 IV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 대규모 기업 등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 1. 겸직 제한 대상(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3항)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자산총액은 개별 법인별로 산정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영 제49조) 〉

- 기간통신사업자 중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 연간 매출액·세입이 1,500억원 이상이고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제외)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한 온라인 판매, 광고, 콘텐츠 제공 등으로 인한 수익과 부가수익, 수수료 수입 등 관련 매출액의 총합을 의미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10월~12월)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순방문자 수(Unique View)로, IP 기준 1일 방문자수로 산정(동일 IP로 동일일에 수회 방문 시 1명으로 산정)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인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및 겸직제한 대상이 아님

## 2. 겸직 제한 업무의 범위

### 겸직 제한의 특징

- 정보통신망법 상 겸직 제한은 직위에 대한 겸직 제한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겸직 제한에 해당
  -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정한 정보보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곤란

#### 〈 사례별 겸직 제한 해당여부 검토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장별로 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법인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이를 총괄 하거나, 특정 사업장과 법인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는 겸직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 개별 사업장의 정보보호 책임자는 지정·신고 의무 대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의 특성상 정보보호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명확한 분리가 곤란하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관련 업무 수행 가능
  - ※ (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업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기능을 같이 구비하고 있는 보안서버에 대한 감독 등
-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수행 가능
-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 가능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관련 질의·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총괄하는 조직의 하위 부서로 정보자원 운영·관리(CIO), 보안업무(CSO)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둘 수 있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이 이외의 다른 업무의 겸직이 제한됨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O, CSO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하위 조직으로 CIO, CSO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 판단하기 곤란</li> </ul> </li> <li>개별적으로 해당 업무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제7호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인지 판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음을 소명하기 위한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직위기술서, 조직도, 위임·전결규정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총괄 조직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를 통해 소명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신고 가능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기업 소속 정보보호 담당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자회사로 파견한 경우, 해당 담당자를 자회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로 파견되어 자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근하는 경우 겸직 제한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 시행령 시행 전 신고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가능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 시행령에 겸직 제한 규정 적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겸직 제한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V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 V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규정
- ◇ 지정·신고 의무대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일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검직 제한 대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일반 자격요건과 특별 자격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함

### 1. 일반 자격요건(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임원급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위란 전자 관련 학과,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졸업한 학력(이하 같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업무 등을, 정보기술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업무 등을 말함(이하 같음)
- 학위 취득 시기와 경력의 선·후는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판단하는데 관계가 없음(이하 같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부서란 부, 팀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장이란 해당 조직의 책임자를 말함
- 해당 조직이 정보보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다른 업무를 함께 소관한 경우에도 정보보호 부서에 해당함
- 정보보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의 경력은 합산하여 산정

## 2. 특별 자격요건(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6제4항)

-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일반 자격요건에 더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상근하는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근이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함
- 출근이란 사회상규 상 회사가 해당 임직원의 근무장소, 사무공간, 근무시간, 사무용 자산 등에 지배력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

- 정보보호 분야 업무 경력이 4년 이상

- 정보보호 분야 업무경력과 정보기술 분야 업무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5년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 업무경력 필요) 이상

- 정보보호 분야 업무와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경력으로 산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관련 질의·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 자격요건으로 상근자를 규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경우 다른 기업 재직자나 해당 기업 비상근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령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 자격요건으로 임원급의 지위와 학력·경력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다른 기업의 재직여부 및 해당 기업의 상근여부는 일반 자격요건과 관계없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의 증명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시 제출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이상 근무한 사장·대표이사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장·대표이사가 사장·대표이사로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소관했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이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처리 업무는 정보보호 분야 업무로 보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1년 이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공석이 된 경우,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대직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신고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 시행령 시행 전 신고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준수 필요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일 이후에 지정하여 신고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터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지정·신고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자격요건 적용이 유예됨</li> </ul> </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②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상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이상인 사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3제4항 관련)**

비고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 가. 전자 관련 학과: 전기전자, 전기전자정보, 전기전자제어, 전자, 전자계산, 전자전기정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자재료, 전자컴퓨터,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정보전자,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제어계측, 컴퓨터과학
  -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통신, 국제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기통신설비,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파, 전기전자전파, 방송설비, 통신컴퓨터,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정보기술
  - 다.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전산, 전산통계, 정보전산,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조시스템,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 정보통신,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보호 분야 업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말한다.
- 가.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분야: 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
  - 나.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분야: 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
  - 다.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 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
4.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말한다.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
  - 나. 정보통신기기 분야: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 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특정 업무용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구축·운영·활용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요령

# VI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요령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방법

- (신고인) 회사 대표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회사 소속 대리인
- (접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 온라인 민원신청, 지역별 관할 전파관리소 방문·우편 또는 팩스 접수
  - ※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법인, 사업자용) 필요
- (제출서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
-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접수 즉시 처리

### 신고처

- 온라인 신고

- 온라인(인터넷)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http://www.emsit.go.kr))
  -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 신청인 정보입력 > 완료

- 우편 및 팩스 : 지역별 전파관리소에 신고【붙임 1】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서식【붙임 2】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관련 질의·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이행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고 사업장별 보안책임자를 둘 수 있으나, 보안책임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신고와 동일하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전파관리소에 지정을 변경한다는 뜻을 밝히고 신고서 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폐지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전파관리소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은 반드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있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 시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전체 목록은 공개하지 않음</li> </ul> </li> </ul>



**붙임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접수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FAX	주소	관할지역*
중앙전파관리소	02-3400-2336	02-3400-23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해외 등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49	02-2680-1758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전파관리소	051-974-5117	051-974-5129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파관리소	061-330-6811	061-330-6829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릉전파관리소	033-660-2815	033-660-2819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강원도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36	042-520-4190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전파관리소	053-749-2817	053-749-29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주전파관리소	063-260-0102	063-260-011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전라북도
제주전파관리소	064-740-2812	064-740-28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	043-261-5828	043-261-583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충청북도
울산전파관리소	052-231-8938	052-257-0939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광역시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관계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규정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li> <li>따라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금융거래법 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이 아닌 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 상 검직이 제한되나 전자금융거래법 상 검직이 가능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다른 업무 검직 가능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상 검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정보기술부문 업무 검직 가능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금융거래법 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필요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만, ICT 분야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필요</li> <li>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 부문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부문에 대해 두 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한 사람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총괄하거나, 각각 별도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가능</li> </ul> </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2.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제11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